

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(이하 "리걸클리닉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 및 사업) 리걸클리닉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분야별 클리닉을 두며, 리걸클리닉과 분야별 클리닉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클리닉별 사업

가. 공익법클리닉 : 이주노동자, 난민, 다문화가정 등의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 지원

나. 기업법무클리닉 :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반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 지원

다. 민형사클리닉 : 일반 시민의 다양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

2. 실무활동을 위한 자료집의 발간

3. 기타 리걸클리닉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익법률활동

제 2 장 임직원 및 직무

제3조(임직원) ① 리걸클리닉에는 소장, 지도교수, 자문위원 및 학생운영위원을 두며,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소장은 전임교원으로서 변호사자격이 있는 교원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.)이 임명한다.

③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④ 자문위원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여 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.

⑤ 학생운영위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
⑥ 상근직원은 직원 또는 조교로 한다.

제4조(임직원의 직무) ① 소장은 리걸클리닉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상담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지도교수는 전문분야별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학생지도를 담당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전문분야별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.
- ④ 학생운영위원은 소장을 도와 리걸클리닉의 운영에 관한 업무와 법률상담의 분배 및 진행을 담당한다.
- ⑤ 상근직원은 리걸클리닉의 운영과 법률상담의 분배 및 진행을 보조한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(구성 및 회의) ① 리걸클리닉에는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소장 및 지도교수와 자문위원 및 학생운영위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자문위원이 위원인 경우 출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리걸클리닉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리걸클리닉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리걸클리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리걸클리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장 법률상담 및 소송수행

제7조(범위) ① 법률상담은 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소송수행은 공익적 관점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구체적인 범위는 의뢰인, 사건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소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법률상담) ① 리걸클리닉의 법률상담은 무상으로 한다.

- ② 법률상담은 자문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, 이 때 자문위원은 접수된 상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생운영위원 또는 상근직원이 정할 수 있다.
- ③ 상담을 진행하는 참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법률상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외부 자문위원의 법률상담 및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소송수행) ① 소송수행은 소송을 담당하게 된 자문위원 또는 외부 변호사와 소송수행 참여를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과 팀을 이루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송을 담당하는 자문위원 및 외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소송 수행과 관련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- ② 소송을 담당하게 된 자문위원 또는 외부 변호사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부터 법문서 작성을 비롯한 소송보조를 받을 수 있다.
- ③ 소송을 담당하게 된 자문위원 또는 외부 변호사는 참여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소송의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임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리걸클리닉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하지 않으며, 소송수행을 담당한 외부 변호사에게 실비를 보상해 주는 정도의 소송수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. 또한 의뢰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사명 및 의무) ① 리걸클리닉 구성원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.

- ② 리걸클리닉 구성원은 의뢰된 사건에 대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,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리걸클리닉 구성원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사건 관련 정보 및 기록 일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재 정

제11조(예산 편성과 편성지침) ① 리걸클리닉 재정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소장은 매년 소요 예산안을 수립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운영활동 비용의 지출) ① 리걸클리닉은 운영 및 활동에 관련된 각종 보고서, 연구서, 지침서, 의견서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활동에 필요한 특장을 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제1항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담당하여 수행할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각 활동에 상응하는 수당 또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8조, 제9조의 법률상담 및 소송 수행과 관련한 자문료 및 소송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리걸클리닉의 비용지출과 관련한 사항은 리걸클리닉 비용지출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13조(회계년도) 리걸클리닉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